

< 정 오 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슈퍼뷰티증권투자신탁[주식]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8.10.11
3. 주요 정정사항 :
 - C-P1, C-P1e 클래스 신설
 -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(김기동 → 소정섭)
 - 법 개정사항 반영

[규약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3조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클래스 신설	①~③ (생략) 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0. (생략) 11. <신설> 12. <신설>	①~③ (현행 유지) 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0. (현행 유지) 11. Class C-P1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 <신설 2018. 10. 11> 12. Class C-P1e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온라인 (On-line) 가입 전용 수익증권 <신설 2018. 10. 11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클래스 신설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0. (생략) 11. <신설> 12.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0. (현행 유지) 11. Class C-P1 수익증권 <신설 2018. 10. 11> 12. Class C-P1e 수익증권 <신설 2018. 10. 11>
제39조(투자신탁보수)	클래스 신설	①~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	①~② (현행 유지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

		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10. (생략) 11. <신설> 12. <신설>	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~10. (현행 유지) 11. Class C-P1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00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8.00</u>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 12. Class C-P1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00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00</u>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
제41조(환매수수료)	문구 정정	①~② (생략)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	①~② (현행 유지)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"수익증권저축약관" 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0. 11>
제52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	문구 정정	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(종류C-P의 경우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4. 1>	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 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0. 11>
부칙 (11)	-	-	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Ⅱ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[1] 투자전략			
4. 운용전문인력	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, 결산 갱신	부책임용전문인력 : 김기동	부책임용전문인력 : 소정섭
Ⅲ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			
[1] 과세			
-	클래스 신설에 따른 과	- <신설>	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, C-P1e 가입자에 한함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

	세 내용 추가		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	클래스 신설	- <신설>	- C-P1, C-P1e 클래스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	클래스 신설	- <신설>	- C-P1, C-P1e 클래스
2. 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변경에 따른 연혁 추가	-	2018.10.11 - C-P1, C-P1e 클래스 신설 -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(김기동 → 소정섭) - 법 개정사항 반영
5. 운용전문인력	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	가.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용전문인력 : 김기동	가.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용전문인력 : 소정섭
		나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용전문인력 : 김기동 (2018.04.16 ~ 현재)	나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용전문인력 : 김기동 (2018.04.16 ~ 2018.10.10) 소정섭 (2018.10.11 ~ 현재)
6. 집합투자 기구의 구조	클래스 신설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<그림> - <신설>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<그림> - C-P1, C-P1e 클래스 추가
		나. 종류형 구조 - <신설>	나. 종류형 구조 - C-P1, C-P1e 클래스
8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 대상	법 개정사항 반영	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(7) 투자한도 초과 -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가.투자대상의 (5)~(9), 나.투자제한의 (2)~(4)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 규정 제4-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의 나.투자제한의 (5)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	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(7) 투자한도 초과 -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가.투자대상의 (5)~(9), 나.투자제한의 (2)~(4)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 규정 제4-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		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	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의 나.투자제한의 (5)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클래스 신설	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- <신설>	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- C-P1, C-P1e 클래스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클래스 신설, 결산 갱신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- <신설>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- C-P1, C-P1e 클래스
	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<신설>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C-P1, C-P1e 클래스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클래스 신설에 따른 과세 내용 추가	나. 과세 (4) <신설>	나. 과세 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, C-P1e 가입자에 한함)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법 개정사항 반영	라. 손해배상책임 ③ 증권신고서 -- 않습니다. -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)	라. 손해배상책임 ③ 증권신고서 -- 않습니다. -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)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Ⅱ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[1] 투자전략			
4. 운용전문인력	부책임용운용전문인력 변경, 결산 갱신	부책임용운용전문인력 : 김기동	부책임용운용전문인력 : 소정섭
Ⅲ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			
[1] 과세			
-	클래스 신설에 따른 과세 내용 추가	- <신설>	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, C-P1e 가입자에 한함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

			<p>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	--	--

<끝>.